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87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이정문・기동민・김정호

김철민 · 김홍걸 · 문진석

민형배 • 박상혁 • 신동근

안민석 • 이동주 • 이용빈

이학영 · 조승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 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7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"을 "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
- 2.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 부가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	제33조(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
토 요청 등) ① ~ ⑥ (생 략)	토 요청 등) ① ~ ⑥ (현행과
	같음)
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	⑦
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	
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<u>대</u>	<u>다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<u>하여는</u>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	<u>는 사항은</u>
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1.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
<u><신 설></u>	2.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
	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
	인 제재부가금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